

식약처 “식품·의약품·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”

식품

-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, 개봉한 제품 판매 불가
- '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' 영업자만 판매 가능 (개인 판매 불가)
- 자가소비용으로 통관된 해외직구 제품은 판매 불가

의약품

-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명백한 불법
- ※ '전문약품'은 의사 처방 후 약가의 지도에 따라 구매·복용
-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

의료기기

- '의료기기판매업' 영업자만 판매 가능 (일부 제품은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 가능)
-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: 전자 체온계, 자동전자혈압계 등
- 온라인 구매 시 의료기기 허가사항을 꼭 확인!

제품별 허가 정보	신고처
• 식품·건강기능식품	⇒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.go.kr
• 의약품	⇒ 의약품안전나라 medruginfo.go.kr
• 의료기기	⇒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emed.wkds.go.kr

분 판매할 수 있다. 그렇지 않은 경우 범
위반으로 무신고 식품 제조·판매자는
5년(3년)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(3천
만 원)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.

이에 따라 구매자는 영업 신고가 제대로
이뤄진 업체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
고, 농·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
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
건강기능식품 역시 판매업을 신고한 영
업자만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 수 있다.
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와
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 여부를 꼭
따져봐야 한다.

의료기기 역시 비슷하다. 체온계, 혈당
측정기, 자동전자 혈압계, 자가 진단용
모바일 의료용 앱 등 판매업 신고가 면
제된 제품을 제외하면 판매업을 신고한
영업자만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
있다.

이 역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인지
확인 후 사야 한다. 특히 개인이 사용하
던 의료기기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
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 감염 위험이
있다.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방식의 소비나 온라
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식품·의약품·의
료기기를 거래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.

식품·건강기능식품·의료기기는 온라인으로 팔 수 있지만, 관련법에
따라 영업을 신고한 업체 혹은 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. 의약품은 약
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.

특히 무허가·무표시 제품, 유통(사용)기한이 지난 제품, 개봉된 제품
을 거래하면 안 된다.

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제조·가공 영업자만 제조·소

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. 온라인에
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·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
인할 수 없고,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전문약품은 의사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·복약 설명을 듣는
게 좋고,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사야 한다. 현행 약사법상 이를 위
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.

아울러 7월 1일부터 온라인 등에서 스테로이드, 에페드린 성분 주사
제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산 사람에게도 과태료 100만 원을 부
과한다. ⑤